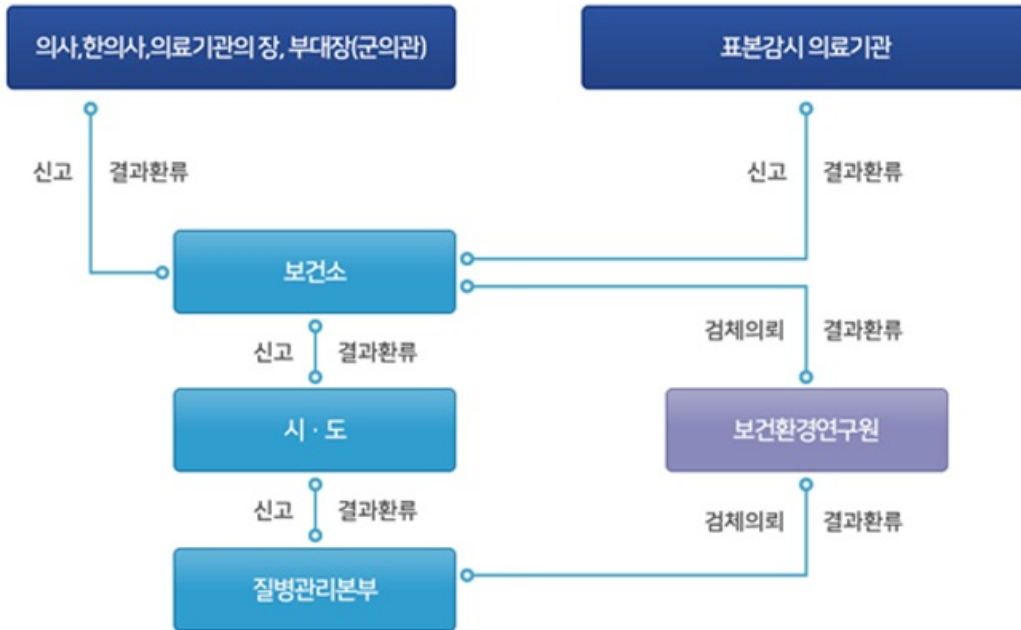




감염병 신고·보고체계

법정감염병 신고
신고의무자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 장
 부대장

그 밖의 신고자 : 제 1군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포함)이나 의사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있을 경우 /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 다수인 집합하는 장소는 그 기관의 장, 관리인, 경영자 & 대표자

신고시기

가. 제1군, 제2군, 제3군, 제4군 : 즉시

감염병환자, 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를 진단했을 때

감염병환자 사체를 검안했을 때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나. 제5군감염병, 지정 감염병, 표본감시감염병: 7일 이내 신고

감염병환자, 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를 진단했을 때

신고방법

감염병 환자 또는 사체 소재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의료기관 소재지 보건소)

신고자가 편한 방법으로(인터넷, 서면, 구두, 전화, 팩스 등

영암군보건소 감염병관리팀 : ☎ 470-6534~6, FAX 470-6576)

미신고시 행정처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질병정보모니터망 지정운영
목적

각종 감염병의 연도별, 지역별, 계절별 발생양상을 신속 정확히 파악 분석하여 감염병 발생예방 및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지정대상 : 병·의원, 약국, 사회복지시설, 학교(보건교사), 이장 등으로 구성

하절기 비상근무 : 5. 1 ~ 9. 30(5개월)

평일09:00 ~ 18:00, 토·일요일, 공휴일은 재택근무 실시

법정감염병 신고

편 성 : 1개반 8명(의사, 간호사, 세균검사요원, 소독요원, 위생관리요원, 행정 요원, 운전요원 등)

임 무 : 환자발생 즉시 출동 역학조사, 소독등 방역조치

모니터요원 주요업무

감염병(의사)환자 발견, 가검물 채취(병·의원) 및 진단시 인적사항과 유행상태파악 통보

기타 각종 감염성질환의 유행상태를 판단하여 보건소에 전화통보

감염병예방을 위한 주민 계몽

민간의료기관과의 협조체제 유지

목적 : 민간의료기관과 협조체제 강화로 감염병 확산방지

대상 : 관내 의료기관 (병,의원), 의·약 단체 등

신고방법

의료기관의 감염병(의사)환자 진단 시 즉시 보건소에 보고토록 신고체계 확립 제1군, 제2군, 제3군, 제4군 감염병 → 진단즉시 인터넷 또는 팩스 통보

생물테러 이중감시 체계 운영

목적

생물테러가 의심되는 증후군에 대한 감시를 통하여 생물테러 가능 감염병 발생을 조기에 인지하기 위한
수인성 감염병 유행을 조기에 인지하여 조기 대처하기 위한

보고대상

생물테러 가능 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후군 환자 / 수인성 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급성 설사 환자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

목적

감염병의 전수보고가 어렵거나(인플루엔자, 성매개감염병) 감염병 관리를 위해 조기발견이 매우 중요한 질환(인플루엔자, 지정감염병)에 대해서 감염병 발생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분석하여, 국민·의료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건증진과 감염병 예방 활동을 지원

대상 : 3군 감염병 중 인플루엔자, 5군감염병, 지정감염병

신고주기 : 진단 후 7일 이내

표본감시 결과 환류

감염병발생정보지(CDMR) 월1회 배부 - 감염병정보망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료제공 (<http://www.cdc.go.kr>)

감염병환자 격리 및 치료

제1군감염병진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환자 치료

제1군감염병환자는 즉시 격리치료(A형간염은 별도 지침에 따름)

의사환자/확진자의 경우 확산 등 예방적인 강제격리 조치로 치료와 관련된 기타치료비용은 도와 국가가 공동부담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환자 격리해제 기준

콜레라, 세균성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 항생제치료 완료 48시간이 지난 후 24시간 간격으로 검사하여 2회 대변 배양검사 결과가 음성일 경우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 항생제치료 완료 48시간이 지난 후 24시간 간격으로 검사하여 3회 대변배양검사결과가 음성일 경우